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038

발의연월일: 2023. 12. 21.

발 의 자:서병수・태영호・류성걸

홍문표 · 최재형 · 이인선

이헌승 • 권은희 • 전봉민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 등의 경우 해당 문자를 읽기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 항)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과 제8항을"을 "제8항과 제9항을"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생	구축·운영 등)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⑦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
	<u>다.</u>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⑧</u> 시·도지사는 <u>제7항에</u> 따른	<u> ⑨</u> <u>제8항에</u>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	
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u>⑨</u> · <u>⑩</u> (생 략)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 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u>제7항과 제8</u> 항을 준용한다.

① (생략)

<u>10</u> •	<u>11)</u>	(현행	제9항	및	제10
항과	같음	-)			
<u>12</u>					
			<u>제</u> 8호	항과	제9
<u>항을</u> -					
<u>্র</u> (ক্	현행	제12항	과 같음	<u>)</u>	